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1207호)

검 토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3. 23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0. 3. 23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10. 3. 31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소득세 도입(안 제1절의 2 지방소득세)

- (소득과세 통합) 현 소득할주민세를 「지방소득세」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
- (균등과세 통합) 균등과세(Flat Tax)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
-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세목변경 → 현행 귀속체계 유지

나.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(안 제2장5절 농업소득세. 제3장2절 사업소세 폐지)

-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 폐지
-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 폐지

다.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과세전 적부심사,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통폐합하고자 함.(안 제8조의 1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및 근거

- 「지방세법 및 시행령」,「고성군세 조례」 등
- 2010지방세 조례개정 표준안(행정안전부)
- 경상남도 세정과-141(2010. 1. 5.) 조례개정 표준안

○ 예산조치 : 불필요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. 1. 1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 및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현행의 세목 중 보통세인 농업소득세(제3조2항1호)와 목적세인 사업소세(제3조3항2호)를 삭제하고 보통세중 지방소득세(안제3조 2항2호) 추가 하였으며,
-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현행 "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"(제8조)와 "지방세심의위원회"(제9조)를 삭제하고 "지방세 심의위원회"(안제8조의1)로 신설하여 통·폐합 하였으며,
- 지방소득세(안제1절의2)도입에 따른 종전 소득과세인 "소득할주민세"를 "지방소득세"로 전환하고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"를 "지방소득세"에 통합하였으며,
- 균등과세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"주민세"와 재산할 "사업소세"를 통합하여 "주민세"로 개편하여 세목을 조정하였으며,
- 현재 과세 중단중인 "농업소득세"와 세목체계 개편으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통합되는 "사업소세"를 폐지하는 것으로

○ 고성군세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게 세목체계를 개편하고,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, 세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 지방 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감 등 세수 추이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필요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문 : 폐지되는 농업소득세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?

◉ 답 : 농지에 식량작물의 소득을 제외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세목인데 현재까지 과세유예 중에 있으므로 징수실적은 없음.

○ 문 : 통합되는 과세적부 심사위원회와 지방세 과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? 통합되는 과세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판사, 변호사, 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군의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음.

◉ 답 : 과세 적부 심사위원회는 과세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되며 전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음. 과세심사위원회는 과표 결정 등을 위해 2회 개최하였음. 과세 심사위원회 구성은 행안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음. 구성시 우리군 현실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하겠음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○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